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2. 2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2월 10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2월 18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1. 2. 2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안동수)

가. 제안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0.7.1 시행)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구체적 근
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실조사의 의뢰 (안 제4조)

-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2)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3)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협약체결 (안 제5조)**

- 1)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안 제6조)**

- 1)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 개인정보 유출, 목적 외 사용금지,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 금지
- 2)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 보관

○ **지도·감독 (안 제7조)**

- 1)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받고 검사 할 의무
- 2)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할 경우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조례는 우리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0. 7.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함
- 종전에는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방식이었지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는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나, 단서규정을 두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이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구청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입법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법규체제와 형식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내용면에서도 상위 법규의 범위 안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및 조사 의뢰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2 호
----------	--------

제출연월일 : 201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0.7.1 시행)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구체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실조사의 의뢰 (안 제4조)

-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2)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협약체결 (안 제5조)

- 1)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안 제6조)

- 1)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 개인정보 유출, 목적 외 사용금지,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 금지
- 2)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

라. 지도·감독 (안 제7조)

- 1)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받고 검사 할 의무가 있음
- 2)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할 경우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담배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1.1.6 ~ 1.26 :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한 영업장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 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

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